정보보안계약특수조건

[시행 2026.3.9.] [기타 2026.3.9., 일부개정]

제1조(목적) 이 정보보안 계약특수조건은 한국수력원자력(주)(이하 '한수원'이라 한다.)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계약 체결 시 준수하여야 할 제반 보안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① '보안사고'란 계약상대자등이 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 내·외부자에 의한 자료유출 및 외부 공격자의 사이버 위협으로 인한 침해사고 등으로 한수원에 피해를 주는 사고를 말한다.

② '계약상대자등'이란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측 하수급인·재하수급인 및 각 작업자 포함을 말한다. <개정 2024.7.17., 2026.3.9.>

③ '한수원 자료'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중 한수원의 「문서관리지침」 및 「기술정보관리지침」에 의거 사외공개에 해당되지 않는 자료를 말한다. <개정 2024.7.17.>

1. 발주자가 계약상대자등에게 제공한 자료
2. 한수원에 제출한 계약 결과물에 포함된 자료

④ '자료유출'이란 '한수원 자료'가 외부로 유출된 것을 말한다.

⑤ '정보시스템'이란 PC·서버·모바일기기 등 단말기, 보조기억매체, 전산·통신장치, 정보통신기기, 응용프로그램 등 정보의 수집·가공·저장·검색·송수신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일체를 말한다.

⑥ '정보자산'이란 '정보시스템'을 포함한 전자정보, 문서 등을 말한다.

⑦ '휴대용저장매체'란 디스켓·CD·외장형 하드디스크·USB메모리 등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PC 등의 정보시스템과 분리할 수 있는 기억장치를 말한다.

⑧ '업무전산망'(이하 '업무망'이라 한다)이란 한수원의 네트워크 중에서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영역으로, 인터넷망과 분리된 내부전산망(이하 '내부망'이라 한다)을 말하고, 망 미분리 사업소는 인터넷서비스도 병행 제공되는 내부전산망을 포함한다.

⑨ '인터넷서비스망'(이하 '인터넷망'이라 한다)이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외부와 연결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망을 말한다. <개정 2024.7.17.>

1. '한수원 협력사 인터넷서비스망'(이하 '협력사 인터넷망'이라 한다)

한수원에서 계약상대자등에 제공하여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 전용망

2. '외부 인터넷서비스망'(이하 '외부 인터넷망'이라 한다)

한수원 외부에서 계약상대자등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연결한 망

⑩ '출입규정 위반'이란 한수원 시설에 출입할 때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 대책법 또는 한수원 출입관리지침에 의한 출입규정을 위반하여 출입하는 것을 말한다. <신설 2020.12.30.>

제3조(보안준수 사항 등) ① 계약상대자등은 한수원 자료가 무단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, 외부 위협으로부터 한수원의 정보자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계약상대자등이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침해사고, 자료유출과 같은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한수원은 정확한 사고 발생 경위 파악을 위해 국가기관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. 이 경우 계약상대자등은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7.17.>

③ 한수원은 필요 시 계약상대자등을 대상으로 보안점검,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를 시행하고, 관련 법령, 규정, 해당 계약조건 위반 시에는 개선조치 요구를 할 수 있으며, 계약상대자등은 이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.

④ 계약상대자등은 한수원 협력사 인터넷망 및 사업자등의 인터넷망(이하 '외부 인터넷망' 이라 함)에 연결된 PC, 전자우편시스템 등의 정보시스템에 한수원 자료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24.7.17., 2026.3.9.>

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등이 한수원 사업관리 부서와 합의하여 한수원 외부에서 계약사업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외부 인터넷망에 연결된 PC, 전자우편시스템 등의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한수원 자료를 저장 및 송수신 하여야 할 경우 다음

각 호의 사항에 따라 보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한수원 사업관리 부서의 승인 후 계약기간(하자보증기간 포함) 동안 이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7.17., 2026.3.9.>

1. 계약사업 착수 시 다음 각 목의 관리적·기술적·물리적 보안대책이 포함된 보안관리계획을 수립 후 한수원 사업관리 부서의 승인을 받을 것
 가. '전산설비관리대장'을 작성하여 지정된 설비에서만 한수원 자료 저장 및 송수신
 나. '자료인계인수대장'을 작성하여 한수원 자료의 저장 및 송수신 시 이력 관리
 다. 문서 암호화 또는 파일 암호설정, 다중인증 전자우편 사용, 공유폴더 사용 금지 등 자료 내용 유출 방지
 라. 계정 비밀번호 설정 및 주기적 변경, 운영체제·백신 업데이트, 악성코드 점검 등 PC 보안관리
 마. 자료 방치 및 휴대용저장매체 사용 통제, 사무실 출입문, 책상 서랍 및 캐비넷 시건 등 물리적 보안
 바. 계약사업 수행과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운영 시 악성코드·취약점 점검 및 해킹 방지 등 보안관리
2. 계약사업 수행 시 보안관리계획에 따른 보안대책 이행 및 월별 자체 점검 수행
3. 계약사업 종료 시 외부 인터넷망에 연결된 정보시스템에서 한수원 자료 완전 삭제 및 증빙 제출. 단, 하자보증 등을 위해 완전삭제 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, 「기술정보관리지침」 제3조에 정의된 기술정보를 제공받은 경우, 그 기술정보의 보관·반납·폐기 관련 사항은 「기술정보관리지침」 제22조를 따름

⑥ 계약상대자등은 한수원 시설을 출입할 때 한수원 「출입관리지침」을 준수하여야 한다. <신설 2020.12.30.>

제4조(계약상대자등의 행위제한 등) ① 계약상대자등은 계약기간(하자보증기간 포함)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24.7.17.>

1. 한수원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,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
2. 한수원 정보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
3. 한수원 정보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및 유포시도
4. 한수원 관련 개인정보·신상정보 목록 유출 및 유출시도
5. 원전 시설사진, 비공개 항공사진·공간정보 등의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
6. 원전 설계도면 등 주요 도면 유출 및 유출시도
7. 계약 결과물에 포함되거나 발주자가 제공한 한수원 자료에 대한 외부 유출 및 유출시도
8. 계약 수행 과정에서 생산한 자료에 대한 악의적 사용 및 개인목적 사용
9. 비인가 원격작업 등을 통한 해킹 및 해킹시도 또는 자료 유출 및 유출시도
10.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한수원 통제구역 무단 침입 및 내부 시스템 접근 및 접근 시도
11. 한수원 업무망 접속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으로 인한 자료유출 및 유출시도
12.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(웹하드·P2P 등)또는 메일,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자료유출 및 유출시도
13. 한수원 업무망과 계약상대자등의 인터넷망 혼용 사용으로 자료유출 및 유출시도
14. 한수원에서 인가하지 않은 휴대용저장매체 무단 사용으로 자료 유출 및 유출시도
15. 한수원 업무망 및 인터넷 사용PC의 보안관련 프로그램을 삭제하여 자료유출 및 유출시도
16. 계약상대자등의 단말기를 한수원 업무망에 무단 연결하여 해킹 및 해킹시도 또는 자료유출 및 유출시도
17. 한수원 자료가 보관된 PC 보안관리 소홀(부팅·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, 비밀번호 노출, 문서 암호화 미처리, 시건장치 미장착 등)로 인한 자료유출 및 유출시도
18. 한수원 자료 방치, 관리소홀(캐비넷·서류함·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등)로 인한 자료유출
19. 제3조 제5항에 따른 외부 인터넷망에 연결된 정보시스템 사용 시 보안관리계획 미수립 또는 미이행으로 인한 자료유출 및 유출시도

② 계약상대자등은 계약기간(하자보증기간 포함) 중 별표 1 "계약상대자등 보안위규 처리기준"의 "위규사항"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24.7.17., 2026.3.9.>

③ 계약기간(하자보증기간 포함) 중 한수원 시설에 출입하는 계약상대자등은 별표 1 「계약상대자등 보 안위규 처리기준」의 '위규사항'에서 정한 출입규정 위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<신설 2020.12.30., 2026.3.9.>

제5조(부정당업자 지정 및 위약벌 부과 등) ① 계약상대자등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제3조의 보안준수 사항 또는 제4조의 행위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별표 1의 "계약상대자등 보안위규 처리기준"에 따라 조치 요구 및 별표 2 "보안 위약벌 부

과기준"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의 부정당업자 지정 , 보안 위약벌 부과를 할 수 있다. 다만, 계약상대자등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24.7.17.>

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등이 제3조의 보안준수 사항 또는 제4조의 행위제한 사항을 위반하여 한수원에 손해를 입힌 경우 보안 위약벌 납부와 별도로 해당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 <신설 2024.7.17.>

[제목개정 2024.7.17.]

제6조(등록취소 및 입찰참가 제한 등) ①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·감독에 관한 법률상 협력업체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가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보안위규 행위를 한 경우 등록취소 또는 입찰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. 다만, 계약상대자 측 작업자에 의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24.7.17.>

② 계약상대자의 입찰제한 세부기준은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「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·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[별표 1] 개별기준에 따른다. <개정 2020.12.30.>

제7조(계약 해제·해지 등) 계약상대자등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보안 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또는 제4조 제1항의 각 호 해당행위를 한 경우, 한수원은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. 다만 보안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보안사고 또는 당해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지할 경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2024.7.17., 2026.3.9.>

제8조(하도급 계약) ① 계약상대자는 업무의 일부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자도 한수원 자료가 무단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외부 위협으로부터 한수원의 정보자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, 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하도급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7.17.>

1. 제3조의 보안준수 사항 및 제4조의 행위제한 사항
2. 하수급자가 보안 사고를 발생시켰거나, 제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하도급 계약 해제 또는 해지 가능
3. 제3조 제2항에 따른 보안사고 발생 시 정확한 사고 발생 경위 파악을 위한 조사 협조

② 한수원은 하수급자가 보안 사고를 발생시켰거나, 제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,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하수급자를 교체하여야 한다.

③ 위 2항에도 불구하고, 한수원은 하수급자의 교체를 요구하지 않고, 제7조에 따라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.

부칙 <2026.3.9.>

제1조(시행일) 이 계약조건(제5차 개정)은 2026년 3월 9일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계약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「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·감독에 관한 법」과 동법 시행령 및 「공기업·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」, 「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」, 「개인정보보호법」, 한국수력원자력 「정보보안업무 세부운용지침」, 「비밀세부분류지침」, 「문서관리지침」, 「기술정보관리 지침」, 「용역 등 외주 사업 보안관리 지침」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.